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사규정

제 정 2011.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2항에 의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산학교원”라 한다)의 자격, 임용, 평가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산학교원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② 산학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뉘며,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제3조(적용) 산학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자격) ①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산업체 경력인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은 별첨1과 같다.

제5조(임용) ① 채용형 산학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우송학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지정형 산학협력교원은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 중점교원으로 지정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지정한다.

③ 산학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제반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고등 특정지원사업에 따라 채용된 산학교원의 계약기간은 동 사업기간 동안에 한한다.

제6조(임무) ① 산학교원은 산학협력 정책제안, 산학협력 관련 외부사업의 기획 및 운영, 산업기술 정보제공,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지도, 학생 현장실습 지도, 산학협력 교육 등의 산학협력 사업 활동 전반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산학교원의 책임시수는 교원의 책임시수에 30% 이상을 감면받아 학과 또는 계열에 소속되어 학생을 교육·지도한다

제7조(교원평가) ① 산학교원의 교원평가는『교원인사규정』 및 『산학협력 실적물의 연구실적물 대체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산학교원은 제6조의 임무에 대하여 별도의 교원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 재임용, 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면직) ① 전임교원 산학교원은 교원인사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② 비전임교원 산학교원은 계약제 초빙교수·석좌교수 인사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채용된 산학교원은 국고등 국고등 특정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당연퇴직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인정받은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별첨1> 산업체 경력인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1.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기타 산업체 경력인정은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5.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6.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의 개업기간
7. 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졸업자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한국항공대학교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8.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9.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개업기간
11.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3.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4.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5.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